

11. 올 下半期에 달라지는 制度・法令

주택 공급

다음달 중순부터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새아파트는 지역주민에게 우선배정되는 물량이 전체의 30%로 줄어 들게 되며 지역에 따라서 채권입찰제도 적용된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새아파트에 당첨되고도 바로 1순위 청약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께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 수지 2지구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30%만 지역주민에게 우선분양되고 나머지는 서울과 수도권지역 주민에게 청약권이 주어진다.

이는 최근 수도권 인기지역 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이 늘어나고 지역우선분양으로 당첨된 새아파트를 대상으로 미등기전매·전대가 성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공급규칙 개정안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해 지역우선 공급물량에 대한 비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건설교통

△ 건설시공능력 공사제 도입=도급한도액제를 시공능력공시제로 변경하고 발주처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이를 발표.

- △ 공장건축규제=조립식 패널을 이용한 단층 공장·창고의 경우 건축주의 직접 시공 허용.
- △ 무면허 건설공사=일반공사의 경축사 외에 건축분야 기술사도 허용하고 비상주 감리원은 설계업무 등 발주청이 필요할 경우 다른 업무 겸직 가능.
- △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공사비 5백억원 이상의 전문책임감리 대상공사와 연면적 3만m²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발주자가 계약서에 품질보증계획 수립을 명시한 공사에 대해 국제기준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수립 의무화.
-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착공 후 매년 1회 이상에서 발주자, 인허가 행정관청이 필요로 하는 공사로 변경.
- △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8월부터 사망 6천만원(현행 3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1천만원), 후유장애 6천만원(3천만원)으로 2배 인상.

증권금융

-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현재 23%로 되어 있는 종목당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올 하반기에 2~3%포인트 정도 추가로 늘어나 25~26%로 확대될 예정.
- △ 증권시장 전면 전산화=그동안 일부 종목에 한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증권매매 체결방식이 9월 1일부터 전면 전산화.
- △ 주가지수 옵션시장 개설=종합주가 지수를 이용한 파생금융상품의 하나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게 되는 주가지수 옵션시장이 7월 7일부터 개설될 예정.
- △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업종별 구분작성=8월 14일까지 제출하는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보고서를 업종별로 구분해 작성하는 제도 도입.
- △ 증권회사 업무 조정=증권사도 7월부터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여어음(CP)을 인수, 매매, 중개업무를 할 수 있게 됨. 대신 증권사들은 다른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 △ 은행 여신위원회제 도입 의무화=모든 은행에 여신위원회 도입이 의무화돼 은행장

의 여신취급권한이 사실상 박탈. 여신위원회는 전무이사 또는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임원과 부서장으로 위원이 제한.

△ 은행 여신특별약관 적용 강화=부실징후 예상업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은행이 여신거래 특별약관을 적용해 강제적인 자구노력을 요구.

△ 계열기업군별 여신심사 활성화=주로 동일기업별로 관리되던 여신심사가 계열기업군별로 변경. 개별기업의 신용도가 좋더라도 계열그룹 전체가 부실하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짐.

△ 은행 업종별 여신관리=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업종별 여신운용지침을 수립, 운영.

△ 동일계열군별 여신한도제 실시=4일부터 은행들은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여신(대출+지급보증)을 할 수 없는 동일계열별 여신한도제가 도입, 시행.

△ 은행 금융채 발행 허용=은행들은 자기자본의 30~40% 범위에서 3년 만기 이상의 금융채 발행이 가능.

△ 지방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완화=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현행 70%에서 60%로 10%포인트 인하.

환경노동

△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감면대상 확대=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인면서 동시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개선부담금을 경감.

△ 환경영향재평가 실시=국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평가협의 당시에는 예측치 못한 환경영향으로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환경영향 재평가를 실시.

△ 환경관리인, 방지시설업, 측정대행업의 변경 신고시기 완화=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토록 완화.

△ 과징금제도 개선=과징금 부과대상을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발전설비 등으로 한정돼

- 있던 것을 제조업의 배출시설까지 확대하고 부과액을 종전의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
- △ 환경관리대행업 도입=대기 수질환경관리인과 유독물 관리자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허용.
 - △ 합병정화조 설치제도 시행=하수처리구역 외에서 분뇨와 생활잡배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되고 시행대상을 하천 호수 바다에서 5백m 이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업의 신증설되는 건축물로 함.
 - △ 중간 고령자와 여성 재고용장려금 지급=45세 이상 중고령자가 퇴직한 회사에 2년 이내에 재입사할 경우 업종별로 1회에 한해 40만~80만원의 재고용 장려금 지급.

무역산업

- △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연·기금과 투자신탁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과 대기업·외국인의 출자제한 완화·중소·벤처기업의 주식액면가 하향조정.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폐지.
- △ 수입제한품목 해제=77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에서 해제.
- △ 전기안전관리 대행자의 자격요건 완화=기술인력의 경력사항을 전기기사 1급 경력 2년, 전기기사 2급 경력 4년 이상으로 완화.
-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기준=선임대상을 소속직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 관리대행기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으로 확대.
- △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제로 전환=시장과 도매센터, 대형점 3m² 이상, 쇼펍센터는 6천m² 이상.

국 민 생 활

- △ 철도 지하철요금 인상=7월4일부터 철도 여객 운임이 평균 9.5%, 화물운임은 3% 인상되고 서울·부산의 지하철 요금은 구간에 관계없이 50원 인상.
- △ 전기요금 인상=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으로 전기요금 5.9% 인상.
- △ 관광진흥기금(출국세) 부과=내국인 해외관광객 대상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항공기 이용 때는 1만원, 여객선 이용 때는 1천원.
- △ 국민연금 자동이체 신청 전화로 가능=지역가입자는 공단지부에 전화로 신청하면 전산망을 통해 각 희망은행에 통보.
- △ 약국 휴일 7부제 실시=공휴일에 격주휴무했던 약국들이 7부제로 변경되고 야간약국 근무시간이 연장돼 약 구입이 편해진다.
- △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 제한=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지정소매인 점포, 흡연구역 중 자판기 설치자가 이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곳으로 설치 장소를 제한.
- △ 수도권 전철 노인 무료 이용=서울시 외에도 1백% 할인해 수원 인천 등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혜택.
- △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하는 2천cc 이하 중 소형 승용차로 장애인 식별표지 부착한 경우 통행료 50% 할인.(8월 시행)
- △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농산물에만 생산자가 표시기준에 따라 유기농산물 표시.
- △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확대=오렌지 감귤 돼지고기 닭고기 등 총 34개 품목이 신규 개방.
- △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콘택트렌즈 관리용품(세척 소독 보존액)을 일반 소비자가 약국 안경점 등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 △ 영화 음악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등에 청소년 유해 표시제=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라 음반 영화 방송프로그램 간행물 전자유기기구 광고선전물 등에 일정 크기의 18세 미만 청소년 유해 표시제도입.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평시 민방위 불응자에 대한 벌칙을 형벌에 과태료로 전환.

- △ 지방세법 개정=과세 전 적부심제도 도입하고 과세자헌장 제정.
- △ 공무원 아닌 배우자 외국근무시 휴직 허용=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아닌 배우자 외국근무시도 휴직 허용.
- △ 증권사 유가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상한 규제 폐지=현재 주식은 0.6%, 채권은 0.3%가 상한선이나 9월부터 상한 규제가 철폐돼 회사별로 경쟁이 가능
-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제도 변경=97년도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7월1일~7월 30일) 이의신청 허용하고 1개월 이내 이의신청 심사 후 결과통지 의무화.
- △ 일반투자자 공모주 배정비율 축소=일반 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이 현행 60%에서 하반기 40%로 축소되고 기관투자자가 몫은 40%로 확대.
- △ 전자공시제도 실시=일반투자자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공중통신망을 통해 상장 회사들의 사업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공시제도 도입.
- △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 개시=LG텔레콤 한통프리텔 한솔 PCS 3사는 8~9월 시험 서비스를 하고 10월부터 상용서비스 실시.
- △ 오존경보제 확대 실시=서울 인천에만 실시했던 오존 경보제가 부산 등 5대 광역시와 경기지역으로 확대. 또 오존오염도를 사전에 예측해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오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존예보제도를 실시.

기 타

- △ 납세증명서 발급=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발급.
- △ 납세자권리헌장 시행=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세무조사시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부여.
- △ 서류접수증 교부=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서 과세표준신고서 심사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납세자에게 서류접수증을 교부.
- △ 부가가치세=전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배합사료에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

국기업이 국내사업상 쓴 경비는 상호주의에 의해 환급.

△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시작=정보통신부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의 하나로 10월에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용을 시작.

△ 초고속정보통신망 1단계 구축 완료=정보통신부는 전국 80개국간을 광전송 장비와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1단계 초고속망 구축을 10월에 완료.

△ 민간예보사업 제도 시행=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기상청장의 허가를 받아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예보사업을 할 수 있음.

△ 공유수면 매립업무제도 개선=공유수면 매립공사 시행자의 국유의 매립지 매수 가능.

△ 도선사 운영제도 개선=단일면허 었던 도선사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면허유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

주택회보